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측량성과 관리 협력체계의 관계기관 범위 확대》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75호)

2024.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제220477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의 ‘관계기관’의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추가 (안 제10조제1항)	2

I.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제220477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영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0. 18.

다. 회 부 일 : 2024. 10.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대민/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협력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협력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3. 검토의견

가.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의 ‘관계기관’의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추가(안 제10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공공기관</u> (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1)에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른 지도등(이하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이라 함)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협력체계(이하 “기본측량성과 관리 협력체계”라 함)의 ‘관계기관’의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의 근간이 되는 간행물로서, 기본측량성과 관리 협력체계를 통해 측량기준점 관리²⁾,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조사³⁾, 공공측량의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표지가 멸실·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지형·지물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실시⁴⁾ 등 「공간정보관리법」 상의 제도가 이행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관리법」 제10조제2항⁵⁾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관리 협력체계에 참여하는 기관에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한편,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 개편⁶⁾ 결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기본측량성과 관리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관계기관의 범위에 변동이 발생하였음.

③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지형·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① 공공측량은 기본측량성거나 다른 공공측량성격을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형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6) 기획재정부는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하여 23개 기관이 지정해제되고 3개 기관이 신규 지정되는 등 총 327개 기관(전년 대비 20개 감소)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그 소관 21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것은 연구기관이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력과 예산 등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⁷⁾.

다만, 종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관리 협력체계 관계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았던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관계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기존과 같은 공간정보 생산·관리·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게 됨.

2024년을 기준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관리 협력체계 관계기관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⁸⁾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및 관리, 건설시추정보

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혁신·도전을 통한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과기계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 2024. 1. 31.

8)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건설시추정보 전산화 및 지하공간통합지도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해오고 있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연구·개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전산화, 측량기기 성능검사, 정밀도로지도 구축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관리 및 연구 분야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⁹⁾은 전국의 지질도 구축, 산사태·토석류 지역 현장조사 및 실시간 국립공원 산사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기능을 해 온 기관으로,

각 기관에서 구축·관리되어 온 공간정보의 품질 유지 및 발전 등을 위해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는 등 각 기관이 기본측량성과 관리 협력체계에 지속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관리 협력체계 관계기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상기 관계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및 이전과 보급

2. 산업계 또는 학계와의 공동 연구 및 개발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4.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9)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치주제도’ 중 ‘지질도’를 구축하는 기관으로서,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를 사용하여 전국 수치지질도(축척1/50,000, 축척1/250,000) 및 지질도(축척 1/25,000, 축척1/50,000, 축척1/250,000)를 구축해오고 있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수치주제도의 종류(제4조 관련)

13. 지질도

것으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 및 국민의 안전 확보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취지의 입법으로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공간정보의 구축·관리 및 연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의 공간정보 생산·관리 기능 및 다른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원활히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관리 협력체계 관계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범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추가적으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률상 근거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¹⁰⁾를 인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의를

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규정한 것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같은 법 제8조¹¹⁾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률상 근거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규정한 입법례¹²⁾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거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3. 삭제 <2011.12.31>
3. 삭제 <2024. 1. 26.>	14. <u>한국지질자원연구원</u>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6. 삭제 <2024. 1. 26.>
6. 한국한의학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9. <u>한국건설기술연구원</u>	20. 한국원자력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1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연구소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특화연구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 현황 】

구 분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제2204772호)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의 자격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포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제2204773호)	안전영향평가기관 및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의 자격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포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제2204774호)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추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제2204775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의 관계기관의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추가

문 의 처

02)6788-5578

참고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설립일자	1983.6.11.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설립목적	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국가기반시설 성능 고도화, 국토재해 대응 기술, 친환경 국토조성 기술, 건설기반 융합 기술, 고성능 건설자재 기술 연구개발 ○ 건설, 국토 기술 정책 수립, 건설분야 국가표준 및 기준 개발, 기술사업화 및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 건설공사 및 기자재 품질인증, 인·지정, 검사 및 시험, 평가, 인증							
최근 대표적 연구성과	○ DNA 기반 노후 교량구조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및 활용기술 개발 - 500만건 이상의 노후화 데이터 확보 및 관리 최적화 기술, 미래 예측 기반 교량 노후도 평가 정확도(90% 이상) 향상 기술 개발 - 다양한 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교량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 주거단지 음식물쓰레기 이용 발전소 규모의 청정 연료 생산기술 개발 -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친환경·저탄소·고발열량 청정연료 생산기술 개발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플랜트 에너지 효율 최적화 기술개발 및 청정연료 실 발전시설 적용성 평가 ○ Tech-lead형 액상화 피해 예측 가시화 시스템 및 고효율/저비용 액상화 보강공법 개발 - 지중구조물 피해 예측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3차원 액상화 위험지도 개발 및 세계 최고수준의 고해상도 액상화 위험지도 구축 기술 개발 - 전세계 유일의 국토지반정보 DB와 액상화 위험지도를 연동하여 자동 갱신 - 구조물 사용성을 유지하면서 광범위한 액상화 위험지반을 효율적으로 보강이 가능한 고효율 저비용 보강공법 개발(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 15% 이상 절감) ○ 우주건설 환경 모사 및 우주기지 건설 기초원천 기술 개발 - 현지자원활용 마이크로파 소결 블록(10cm급) 제조 및 진공 마이크로파 소결 기술 - GPS 음영지역의 1 lux 이하 저조도 환경에서 정확도 1m 급의 고정밀 3차원 지형 모델 구축을 위한 무인 지형 정보화 기술 개발 - 저전력(40.5 W), 경량(8.7 kg), 소형화(0.2 m3), 시추심도(1 m), 14 MPa 급 우주용 시추장비 개발							
조직/인력 (‘24.11.14.)	조직규모		정규인력 전체 인력현황(명)					
	2부원장, 13본부, 3연구소, 1위원회, 1부, 1스쿨, 8센터, 21실, 1팀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무기직	합계
			524	37	65	45	22	671
			연구직 인력현황(명)					
			박사		석사이하		계	
	390	134		390				
수지총괄 (사업계획 및 예산) *이월금 제외	수 입(백만원)			지 출(백만원)				
	항목	’23예산	’24예산	항목	’23예산	’24예산		
	○ 정부출연금	69,782	60,320	○ 인건비	57,937	59,378		
	○ 자체수입 등	119,507	103,109	○ 연구직접비	119,098	92,081		
	○ 대체조정	-	-	○ 경상운영비	8,215	8,431		
				○ 시설비	1,039	1,039		
			○ 기타	3,000	2,500			
	계	189,289	163,429	계	189,289	163,429		

참고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설립일자	1948.9.13.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설립목적	국내외 육상·해저 지질조사, 지하자원의 탐사·개발·활용,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지질과학 연구, 지질자원 기반정보 구축·제공 및 지반·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 연구개발 ○ 지진·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대응 연구 개발 ○ 광물자원 탐사·개발 및 활용·순환 연구개발 ○ 지하수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전 연구개발 ○ 지하 에너지자원확보 연구 개발 ○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응용 수탁·위탁,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육성, 기술정책 수립, 시험평가, 인증 등							
최근 대표적 연구성과	○ 북한 핵실험 신속한 탐지(1차,2차,3차,4차,5차,6차) 및 경주, 포항지진 실시간 탐지 ○ 한국형(하이브리드) 현장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 ○ 1:100만 한국지질도 개정, 대한지질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20) ○ 국가 활성단층지도 제작 및 한반도 동남권 활성단층 실시간 관측소 구축(진행 중) ○ 대용량 ESS용 원료소재 광물 확보(바나듐 함유 신규 광체 확인) ○ 탈질 폐촉매 회소금속(텅스텐, 바나듐, 타이타늄) 재활용 기술 개발 ○ 산사태 사전경보 발령 시스템 개발(24시간 이내) ○ 포항지역의 점토광물을 이용한 의약품 제조 실증화 기술개발(강소연구개발특구 1호, 10호 연구소기업 설립) ○ UN CDM ‘탄소광물화 활용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국내 최초 승인 획득							
조직/인력 (’23.9.)	조직규모		정규인력 전체 인력현황(명)					
	1부원장 (6연구본부, 1포항센터, 1사업단, 1실), 3지원본부, 1부, 1실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무기직	합계
			327	89	68	3	31	518
			연구직 인력현황(명)					
			박사		석사이하		계	
	311		16		327			
수지총괄 (사업계획 및 예산) *이월금 제외	수 입(백만원)			지 출(백만원)				
	항목	’23예산	’24예산	항목	’23예산	’24예산		
	○ 정부출연금	113,020	93,886	○ 기관운영비	42,458	43,453		
				- 인건비	38,917	39,972		
				- 경상운영비	3,541	3,481		
				○ 주요사업비	54,688	39,840		
				○ 시설사업비	15,874	10,593		
계	113,020	93,886	계	113,020	93,886			